#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입주계약서 (일반기업실/초기창업기업실/보육기업)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속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과 (이하"갑"이라 한다)과 (주)에넘 대표: 나기수 (이하 "을" 이라한다)간에 연구원 입주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 (기본원칙) "갑"은 연구원 공간을 "을"에게 제공하며, "을"은 그 공간을 사용하고, 창업 및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
# 제3조 (목적물의 표시)

- ① "갑"은 "을"에게 아래의 목적물을 사용토록 한다.
- ② 소재 :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내 입주기업실(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)
- ③ 입주계약면적 : 743<u>호실, 87.1㎡ (26.39평)</u> (이하 "목적물"이라 한다)

# 제4조 (입주기간)

- ①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, "갑"의 승인 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국유재산 유상사용.수익허가서의 계약기간을 우선으로 한다.
- ② 입주기간은 <u>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(3개월)까지</u>로 한다.
- (단, 위 항에도 불구, 우리대학의 학내 시설 공간 조정 시행 시엔 대학의 운영방침을 따른다.)

# 제5조 (입주기한, 입주인가)

- ① "을"은 제4조의 입주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.
- ③ "을"이 입주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갑"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입주 연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"을"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.

# 제6조 (운영비분담금 및 공과금 납부)

- ① "을"은 운영비분담금, 입주선납금, 공과금 및 국유재산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.
- ② "을"은 월분담금(통신망사용료 실별 <u>31,000</u>원 **미포함**)과 월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신규계약자일 경우 입주시까지, 연장계약자일 경우 첫 달의 15일까지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하며, 익월분부터는 매월 <u>20</u>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한다.
  - 1. 운영비분담금은 1㎡,1월당 <u>7,240원</u>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중에라도 쌍방의 협의하에 운영비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2. 월운영비분담금 : 일금 육십삼만육백육십원 (₩ 630,660)
  - 3. 부가가치세 : 일금 육만삼천육십원 (₩ 63,060)
  - 4. 월 납부 금액 : 일금 육십구만삼천육백육십원 (₩ 693,660)
- ③ "을"은 입주선납금을 입주시까지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연장계약자의 경우 기납부한 선납금 전액과 상계처리하고 부족시에는 차액금을 첫 달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

- 1. 산정 입주선납금 : 일금 육백구십삼만 원(₩ 6,930,000)
- 2. 기납부 입주선납금 : 일금 원(₩ )
- 3. 최종 청구 입주선납금 : <u>일금 육백구십삼만 원(₩ 6,930,000)</u>
- ④ "을"은 제3조에서 정한 입주면적에 대하여 월 운영비분담금(사용료 제외) 및 전기료를 "갑"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연구원 입주에 따른 냉난방, 청소비, 오물수거비, 공용시설 및 공용장비 유지보수비등은 운영비분담금에 포함된다. 단, 전력소비량이 큰 실험장비의 경우 "을"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납부한다. 수도는 계약시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나 대학의 방침이 변경되어 유료화 될 경우 입주기업 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전기요금은 실마다 설치된 계량기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서 운영비분담금으로 연구원의 시설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할 경우 "을"과 협의하여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⑦ 운영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화 및 팩스요금, 개별 전산망 사용자에 대한 통신망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.
- ⑧ 최종의 운영비분담금은 <u>중도퇴거 시</u> "갑"이 실제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. 단, <u>월중 입주기간이 15일 미만인 업체에 한한다.</u>
- ⑨ "을"은 "갑"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"갑"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- ⑩ 제2항, 3항에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.
- ① 제3항에서 "을"이 납부기한 내에 운영비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금액과 미납금액에 <u>5%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해당월의 익월 납부기한까지 납부</u>하여야 한다.
- ② 운영비분담금은 타 부담금과 상계 할 수 없으며, 입주선납금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정산, 환급한다. "갑"은 정산한 입주선납금을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"을"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- ③ <u>퇴거 시 청소비, 실바다 왁스작업, 벽면, 타일 손상을 포함한 건물원상회복 비용을 입주선납금에서 정산하고 잔액은 환급한다. 다만, 원상회복비용이 선납금 보다 초과학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</u>

## 제7조 (실제입주일 및 실제퇴거일)

- ① 제6조에서 "실제입주일"이라 함은 "을"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류를 보육실내에 설치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.
- ② "실제퇴거일"이라 함은 "을"의 퇴거사유로 보육실을 출소하고 목적물을 원상복구 한 후 "갑"에게 명도하는 날을 말한다.

#### 제8조 (목적물에 관한 "을"의 권리)

- ①"을"은 목적물을 입주승인품목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"을"은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9조 (시설의 이용)

- ① "을"은 연구원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가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이 공동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"갑"에게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"을"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"갑"에게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"을"이 연구원의 보유 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구원 시설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# 제10조 (부대시설의 이용)

"갑"은 "을"의 동반인력에 대해 충북대학교 내 식당, 도서관, 매점, 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(청소)

- ① 연구원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"갑"이 실시하고 "을"의 점유물 및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"을"이 실시한다.
- ② 분리수거 등의 청소에 관련된 사항은 본 연구원이 실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.

#### 제12조 (시설의 사용기간)

시설의 사용기간은 연구원의 운영시간(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, 단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,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) 이내로 한다. "을"이 운영시간 이후까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"갑"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운영시간 연장은 매 분기별로 포괄 신청할 수 있다.

## 제13조 (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)

"을"은 목적물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"을"의 신청에 따라 "갑"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4조 (대여금지)

"을"은 "을"의 보육실을 사전에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.

# 제15조 (손해배상의 의무) 교회하는

"을" 및 그 외 참여인력들이 연구원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"을"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100

# 제16조 (인력 및 장비 지원)

- ① "갑"은 "을"에게 인력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인건비는 "을"이 부담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의 요구 시 연구 장비의 이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장비 이용료를 "을"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 제17조 (기술 및 경영지도 등 기타 지원)

- ① "을"은 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가 있을시 항상 "갑"과 우선적으로 상의하고 "갑"은 "을"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연구원 및 충북대학교 지원부서 등을 독려하여 "을"의 창업활동과 기업 활동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.

#### 제18조 (숙박의 제한)

"을"은 연구원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연장업무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"갑"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제19조 (작업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)

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연구원내의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"을"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"갑"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 (물품의 반출입)

- ①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인화물,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연구원 내로 반입할 수 없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"을" 갖추고 "갑"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.
  - 2. 공사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, 수량, 규격, 중량 등을 사전에 "갑"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"갑"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21조 (방재관리)

"을"은 연구원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연구원 내부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② "을"은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"갑"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"갑"이 실시하는 방재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.
- ④ 기타 "갑"이 방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22조 (주차장)

- ① "을"의 동반인력은 주차장 사용에 있어 주차규정(충북대 시설규정)에 따른다.
- ② "을"의 동반인력의 차량을 연구원내에 주차시킬 수 있으나 차량의 사고, 도난,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"을"이 진다.

#### 제23조 (보안관리)

- ①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"갑"과 "을"이 각 1개씩 보관한다.
- ② "을"이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"갑"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"을"이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연구원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"을"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.
- ④ "을"은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"갑"이 보관하는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 제24조 (통지의무)

"을"은 일정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"갑"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"갑"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# 제25조 (입주자의 금지사항)

"을" 및 그 외 참여인력 등은 연구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① 입주공간에서 습식 실험 행위
- ② 연구원내 설치한 교육전산망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③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, 통로,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,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
- ④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- ⑤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, 제조 및 판매행위
- ⑥ "갑"이 지정하는 이외의 목탄, 석유, 유류,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체열 하는 행위

- ⑦ 임의로 냉.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⑧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
- ⑨ "갑"이 설치한 구조물,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, 오손 하는 행위
- ⑩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
- ⑪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
- ⑩ "갑"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

#### 제26조 (목적물내 출입 행위)

연구원의 담당직원은 연구원 내의 보안, 위생, 방범,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목적물내에 출입할 수 있다.

### 제27조 (계약해지 및 퇴거)

- ① "을"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갑"은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제5조의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
  - 2.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
  - 3.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
  - 4.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,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- 5.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,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
  - 6.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의 입주업체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  - 7. "을"이 소정의 운영비분담금 및 공과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  - 8.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
  - 9. "갑"의 여구원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  - 10. 제6. 9. 14. 15. 19. 21. 22. 24. 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"갑"은 "을"에게 해지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"갑"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"갑"은 재고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"을"은 "갑"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⑥ "을"은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여 퇴거할 수 있다. 다만, 그 사유를 명시하여 <u>퇴거희망일 60일 전까지</u> "갑"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"갑"은 검토 후 "을"에게 이를 승인통보 한다. 퇴거통보 의무일(60일전)까지 "갑"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"을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
  - 1. 퇴거희망일 30일전에 통보 시 : 입주선납금의 1/3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
  - 2. 퇴거희망일 30일 미만 기간 내에 통보 시 : 입주선납금의 1/2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
  - 3. 퇴거일 기준 운영비분담금 미납 발생 시 미납금액만큼을 입주선납금에서 전액 공제하며, 공제후의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27조다

#### 제28조 (명도 및 원상회복)

① "을"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후 14일까지,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연구원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목적물을 입주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명도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"을"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"갑"은 임의로 "을"의 소유물을 일정한 장소에 옮겨 보관할 수 있으며, "을"의 소유물을 옮기거나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"을"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"갑"이 제2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및 보관료 기타 일체의 비용은 "을"이 부담하여야 하며, "갑"은 입주보증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서 "을"은 "갑"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"갑"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#### 제29조 (계약변경)

"갑"과 "을"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만료일까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30조 (분쟁 및 관할)

- ① 본 계약에 관하여 "갑"과 "을"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해결한다. 단, "갑"과 "을"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"갑"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-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"갑"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## 제31조 (관리규정 및 준칙)

"갑"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"을"의 재산을 보호하고 연구원내 시설물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, 시행,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규정 등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.

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, "갑"과 "을"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본인( / 1/

)은 위 모든 조항을 확인하였으며,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2년 3월 29일

갑 :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속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원 장 서 보

( 사업자등록번호 : 301-82-18199 )

주소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, E9동(개신동)

Tel: (043) 261 - 3440 Fax: (043) 261 - 3204

을 : ㈜쎄넘 대표 나 기 수

( 사업자등록번호 : 144-81-24655)

주소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, E9동(개신동)

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743호

Tel: 010-2760-1359

Fax : (043)